운반기계, 건설기계 및 양중기

2018. 03. 00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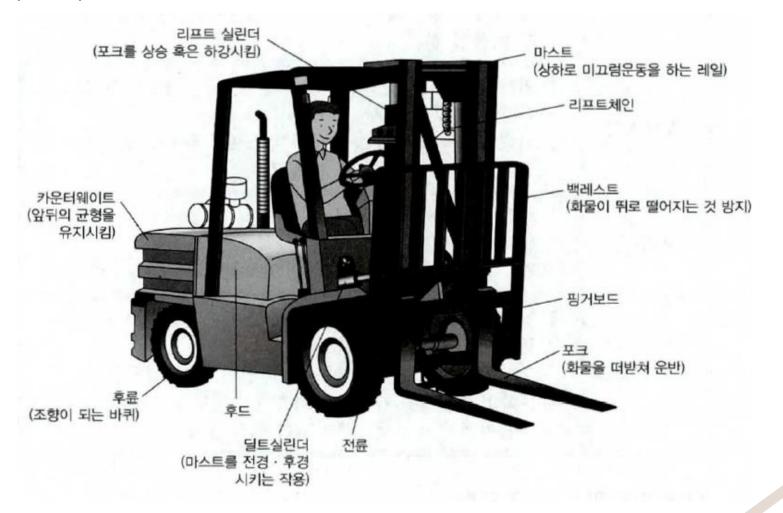
- I 운반기계 및 건설기계
- Ⅱ 크레인 등 양중기
- Ⅲ 예상문제

- 운반기계
 - 접촉 방지조치
 - ❖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 다만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❖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.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 방지조치 (**)
 - ❖지반의 부동침하(불동침하) 방지
 - ❖ 갓길의 붕괴 방지
 - ❖ 유도자배치

- 운반기계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적재 시의 조치
 - ❖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
 - ❖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 - ❖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
 - ❖화물을 적재 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.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
 - ❖ 포크, 버킷,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변에 내려둘 것
 - ❖ 원동기를 정지 시키 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 - ❖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.
 - ❖ 다만,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운반기계
 - 싣거나 내리는 작업
 - ❖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①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
 - ②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
 -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
 - ④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

- 지게차
 - 포크, 램(ram)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 (mast)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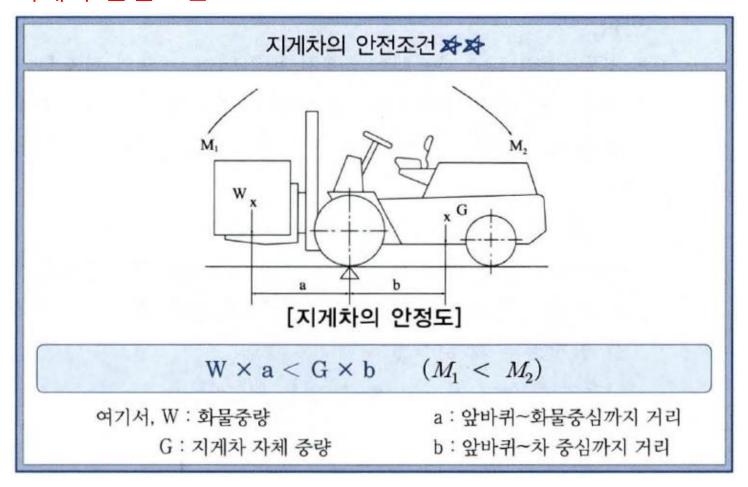
- 지게차
 - 방호장치 (**)
 - ❖ 헤드가드: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 (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)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(等分布靜倚重)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❖ 백레스트 :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(backrest) 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❖ 전조등, 후미등 : 지게차에는 7 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 등, 2 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❖ 안전벨트 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▶ "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", "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"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,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
 - ▶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

- 지게차
 - 설치방법 (**)

헤드가드	①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 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 는 1미터 이상일 것 ③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2미 터 이상일 것	
백레스트	①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②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 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	
전조등	①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②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③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	
①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②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③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④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투영면적이 12.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		

- 지게차
 - 지게치에 의한 사고 유형
 - ❖ 주행 시 지게차와 작업자의 충돌(가장 많다)
 - ❖화물의 낙하
 - ❖지게차의 전도, 전락
 - 지게차 안전조건
 - ❖ 지게차가 전도되지 않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체의 모멘트($M_1 = W X a$) 보다 지게차의 모멘트($M_2 = G X b$) 가 더 커야 한다.
 - ❖전경사각: 마스터의 수직위치에서 앞으로 기울인 경우 최대경사각 5~6° (*)
 - ❖ 후경사각: 마스터의 수직위치에서 뒤로 기울인 경우 최대경사각 10~12°(*)

- 지게차
 - 지게차 안전조건



- 지게차
 - 지게차 작업시의 안정도 (**)

안정도	지게치	아의 상태
하역작업시의 전·후 안정도: 4% 이내(5t 이상: 3.5%)		(위에서 본 경우)
주행시의 전·후 안정도 : 18% 이내		
하역작업시의 좌·우 안정도: 6% 이내	A.	(밑에서 본 경우)
주행시의 좌·우 안정도: (15+1,1V)% 이내 최대 40%(V: 최고속도 km/h)		
안정도 = $\frac{h}{l} \times 100(\%)$	1	$\int_{\mathbb{R}^{+}} h$

- 지게차
 - 지게차 운전중 주의사항 (*)
 - ❖ 정해진 하중 및 높이를 초과하여 적재를 금지한다.
 - ❖ 운전자이외에는 절대 탑승을 금지한다.
 - ❖ 급격한 후퇴를 피해야 한다.
 - ❖정해진 구역 외는 운전을 금지한다.
 - ❖ 견인 시 견인봉을 사용한다.
 - ❖짐을 싣고 비탈길을 내려갈 때에는 후진한다.
 - 지게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(**)
 - ❖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 - ❖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 - ❖ 바퀴의 이상유무
 - ❖전조등, 후미등, 방향지시기,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
- 구내운반차
 - 제동장치
 - ❖ 구내운반차(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한다)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❖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
 - ❖ 경음기를 갖출 것
 - ❖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센티미터 이상일 것 (*)
 - ❖ 운전자석이 차실 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
 - ❖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출 것. (다만,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)
 - 구내운반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(***)
 - ❖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 - ❖하역장치 빛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 - ❖ 바퀴의 이상유무
 - ❖전조등,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
 - ❖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

- 고소작업대
 -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 야 한다.
 - ❖작업대를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,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(*)
 - ❖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
 - ❖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
 - ❖붐의 최대 지변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
 - ❖작업대에 정격하중(안전율 5이상)을 표시할 것
 - ❖작업대에 끼임·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 치를 설치할 것
 - ❖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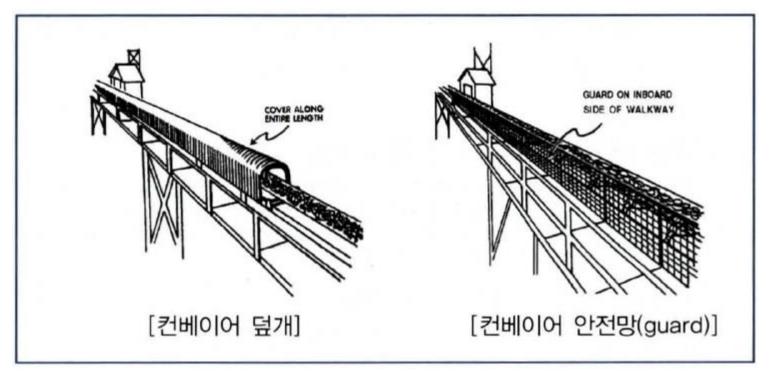
- 고소작업대
 - 악천후 시 작업중지
 - ❖ 비·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10 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.
 - 고소작업대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(***)
 - ❖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 - ❖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유무(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)
 - ❖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
 - ❖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



- 화물자동차
 - 승강설비의 설치
 - ❖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과의 사이를 안전 하게 상승 또는 하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화물 자동차 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 (***)
 - ❖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
 - ❖하역 장치 및 유압장치 의 기 능
 - ❖ 바퀴의 이상 유무

- 컨베이어
 - 컨베이어의 방호장치 (***)
 - ❖ 이탈등의 방지장치
 - ▶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정전·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(다만,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)
 - ❖비상정지장치
 - ▶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(다만,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 - ❖ 덮개, 울의 설치
 - ▶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컨베이어 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컨베이어
 - 컨베이어의 방호장치 (***)



- 건널다리의 설치 (*)
 - ❖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컨베이어
 - 통행의 제한
 - ❖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 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 다.
 -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(***)
 - ❖ 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 유무
 - ❖ 이탈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
 - ❖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 - ❖ 원동기·회전축·기어 및 풀리등의 덮개 또는 울등의 이상유무

- 차량계 건설기계
 -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
 - ❖ "차량계 건설기계"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
 -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등의 방지
 - ❖지반의 부동침하방지
 - ❖ 갓길의 붕괴방지
 - ❖ 유도하는 자 배치
 - ❖도로의 폭의 유지
 -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
 - ❖ 포크, 버킷,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
 - ❖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 - ❖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.
 - ❖ 다만,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항타기, 항발기
 - 도괴의 방지
 - ❖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·깔목 등을 사용할 것
 - ❖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 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강할 것
 - ❖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시킬 것
 - ❖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
 - ❖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대는 3 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 ·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
 - ❖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줄을 3줄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
 - ❖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

- 항타기, 항발기
 -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
 - ❖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말 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 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(*)
 - ❖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·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
 - ❖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 로프에 있어서 추·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·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
 - 도르래의 위치
 - ❖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부 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 · 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.
 - ❖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도 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15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(*)
 - ❖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 야한다 (*)

- 항타기, 항발기
 - 항타기, 항발기 조립하는 때 점검 사항 (*)
 - ❖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
 - ❖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
 - ❖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 - ❖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
 - ❖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

- 양중기
 - 양중기란 동력을 사용하여 화물, 사람 등을 운반하는 기계, 설비를 말하며, 크레인, 이동식크레인, 리프트, 곤돌라, 승강기 등이 있다.
 - 양중기의 종류
 - ❖크레인 [호이스트(hoist) 를 포함한다]
 - ❖ 이동식 크레인
 - ❖리프트(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.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
 - ❖ 곤돌라
 - ❖ 승강기(최대하중이 0.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

- 양중기
 - 크레인

드레그 크레인 (drag crane)	① 크레인 선회부분을 고무 타이어의 트럭 위에 장치한 기계를 말한다. ② 연약지 작업이 불가능하나 기동성이 크고 미세한 인칭 (inching)이 가능하다. ③ 고층 건물의 철골 조립, 자재의 적재, 운반, 항만 하역 작업 등에 사용한다.
휠 크레인 (wheel crane)	 크롤러 크레인의 크롤러 대신 차륜을 장치한 것으로서 드레그 크레인보다 소형이며, 모빌 크레인이라고도 한다. 공장과 같이 작업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장소나 고속 주행을 요할 경우에 적합하다.

- 양중기
 - 크레인

크롤러 크레인 (crawler crane)	 크롤러 셔블에 크레인 부속장치를 설치한 것으로서 안정성이 높으며 다목적이다. 고르지 못한 지형이나 연약 지반에서의 작업, 좁은 장소나습지대 등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. 	
케이블 크레인 (cable crane)	① 타워(tower)에 케이블을 쳐서 트롤리를 달아 운반물을 달아 올리는 기계이다. ② 댐 공사 등에서 콘크리트나 자재 운반 시에 이용한다.	
천장주행 크레인	① 천장형 크레인에 주행 레일을 설치하여 이동하도록 한 기계이다.② 콘크리트 빔의 제작이나 가공 현장 등에서 사용한다.	
타워 크레인 (tower crane)	(Z) 수도 높이를 필요도 하는 건축 연상이나 밀덩 고/숙와 등에	

- 양중기
 - 이동식 크레인
 - ❖ "이동식 크레인" 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 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기중기 또는 화물 · 특수 자동차의 작업 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.
 - 리프트
 - ❖"리프트"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를 말한다.

- 양중기
 - 리프트

건설작업용 리프트	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 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일반작업용 리프트	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 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서 건설현장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간이리프트	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 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.2미터 이하인 것 또는 자동 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구조의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
이삿짐운반용 리프트	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 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

- 양중기
 - 승강기

승용 승강기	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를 말한다.	
인화(人貨)공용 승강기	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 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 를 말한다.	
화물용 승강기	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승 강기를 말한다.	
에스컬레이터	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 단이나 보도상태의 승강기를 말한다.	

- 양중기
 - 양중기의 방호장치 (**)
 - ❖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(樓過防止裝置), 비상정지 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[(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(final limit switch), 조속기(調速機), 출입문인터록(inter lock) 등을 말한다]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. (*)
 - ▶ 크레인
 - ▶ 이동식 크레인
 - ▶ "자동차관리법"에 따라 차량 작업부에 탑재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
 - ▶ 간이리프트(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)
 - ▶ 곤돌라
 - ▶ 승강기
 - ❖ 권과방지장치는 혹·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(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)이 드럼, 상부 도르래, 트롤리프 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.25 미터 이상[(직동식 (直動式) 권과방지장치는 0.05미터 이상으로 한 다)]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.
 - ❖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 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양중기
 - 양중기의 방호장치 (**)

	크레인 (호이스트 포함)	・과부하방지장치・권과방지장치(捲過・비상정지장치<기타 방호장치>・훅의 해지장치	• 제동장치
	이동식 크레인	・과부하방지장치・권과방지장치(捲過・비상정지장치<기타 방호장치>・혹의 해지장치	b防止裝置) • 제동장치 • 안전밸브(유압식)
리프트	간이리프트, 이삿짐운반용리프트 (적재하중이 0.1t 이상인 것)	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(捲過비상정지장치	b防止裝置) • 제동장치
	간이리 <u>프트</u> 를 제외한 리프트	• 과부하방지장치 • 비상정지장치	권과방지장치조작반(盤) 잠금장치

- 양중기
 - 양중기의 방호장치 (**)

곤돌라	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(捲過防止裝置)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
승강기 (최대하중이 0.25t 이상인 것)	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(捲過防止裝置) 비상정지장치 ・제동장치 파이널리미트스위치 출입문인터록 ・속도조절기

- 양중기
 - 크레인과 건설물 등과의 통로
 - ❖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.6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 - ❖ 다만,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.4미터 이 상으로 할 수 있다. (*)
 - ❖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·보수·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
 - ❖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.3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.3 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있다. (*)
 - ❖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
 - ❖크레인 거더(girder)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
 - ❖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

• 양중기

-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· 점검 또는 해체 작업시의 조치사항 (*)
 - ❖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
 - ❖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 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
 - ❖비, 눈,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
 - ❖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
 - ❖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
 - ❖크레인의 성능,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(應力)을 갖는 구조로 기 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
 - ❖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 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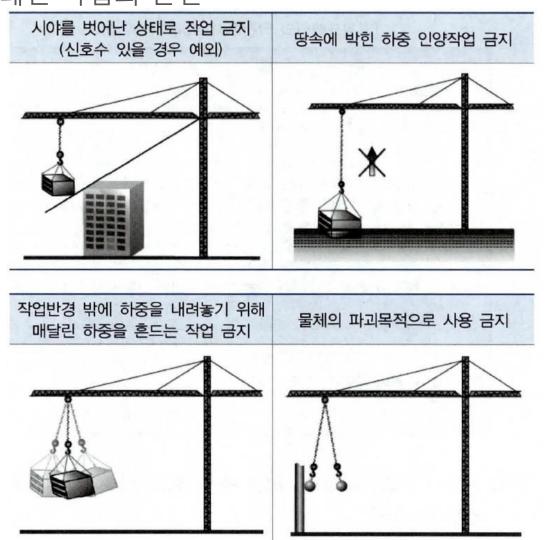
- 양중기
 -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(**)
 - ❖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
 - ❖설치 · 조립 및 해체순서
 - ❖ 작업도구·장비· 가설설비(假設設備) 및 방호설비
 - ❖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
 - ❖ 타워크레인 지지방법
 - 탑승의 제한
 - ❖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 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· 조작스위치 등 탑승 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
- 양중기
 - 탑승의 제한
 - ❖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)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 - ❖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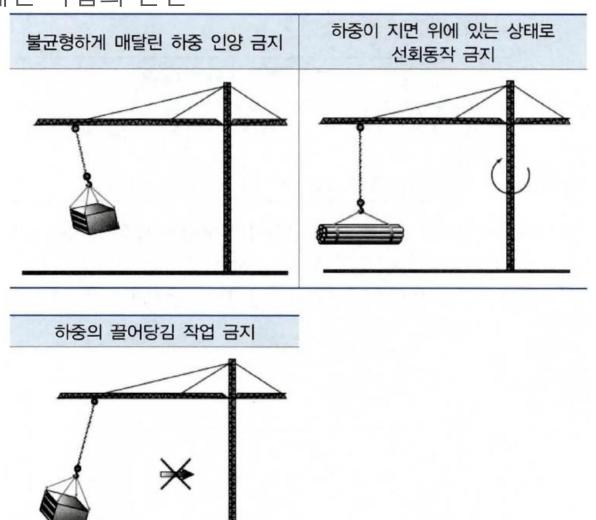
- 양중기
 -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
 - ❖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,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(*)
 - ▶ 인양할 하물(倚物)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
 - ▶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(또는 보관고)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
 - ▶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·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
 - ▶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 하지 않도록 할 것
 - ▶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 할 것(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- 양중기
 -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
 - ❖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▶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히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 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 · 사용할 것
 - ▶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 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
 - ❖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.

- 양중기
 - 크레인 작업의 안전



- 양중기
 - 크레인 작업의 안전



- 양중기
 - 타워크레인의 악천후시 조치사항 (***)

①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	타워크레인의 설치·수리·점검 또	
초과하는 경우	는 해체작업을 중지	
② 순간풍속이 매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	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	
③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	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	
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(中震)	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기계	
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	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	
④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	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	
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	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	
경우	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	
⑤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 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	건설작업용 리프트(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) 및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	

- 양중기
 -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(***)

크레인	 권과방지장치·브레이크·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(橫行)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
이동식 크레인	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·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
리프트	• 방호장치·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
곤도라	• 방호장치·브레이크의 기능 • 와이어로프·슬링와이어 등의 상태

-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
 -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
 - ❖ 안전계수 :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 (*)

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**

-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: 10 이상
-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: 5 이상
- ③ 훅,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의 경우: 3 이상
- ④ 그 밖의 경우: 4 이상

-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
 -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
 - ❖고리걸 혹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 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
 - ❖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(揚重)작업 용구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며, 가스용단(溶斷)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아니된다.
 - ❖ 아크(arc), 화염, 고온부 접촉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-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
 -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항 (***)
 - ❖ 이음매가 있는 것
 - ❖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(비자전로 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 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 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)인 것
 - ❖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
 - ❖꼬인 것
 - ❖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
 - ❖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
 -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(**)
 - ❖ 달기 체인의 길이 증가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 과한 것
 - ❖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
 - ❖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

-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
 -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(**)
 - ❖꼬임이 끊어진 것
 - ❖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
 - 변형되어 있는 혹·샤클 등의 사용금지 사항
 - ❖혹·샤클·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 - ❖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혹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 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❖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.

-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
 - 변형되어 있는 혹·샤클 등의 사용금지 사항

와이어 로프의 안전율 계산 차	$S = \frac{N \times P}{Q}$ 여기서 S: 안전율 N: 로프 가닥수 P: 로프의 파단강도(kg/mm²) Q: 허용응력(kg/mm²)
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 계산 ※	총 하중 (w) = 정하중 (w_1) +동하중 (w_2) = w_1 + $(\frac{w_1}{g} \times a)$ $(w_2 = \frac{w_1}{g} \times a)$ 여기서, w : 총 하중 (kg_i) w_1 : 정하중 (kg_i) w_2 : 동하중 (kg_i) g : 중력 가속도 (9.8m/s^2) a : 가속도 (m/s^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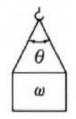
-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
 - 변형되어 있는 혹·샤클 등의 사용금지 사항

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계산 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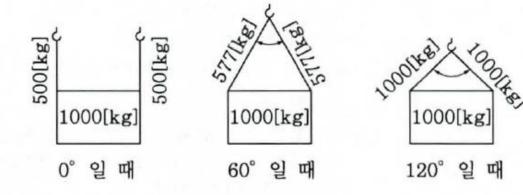
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$(kg_f) = \frac{w}{2} \div \cos \frac{\theta}{2}$

w: 매단물체의 무게(kg_f)

θ: 매단 각도 (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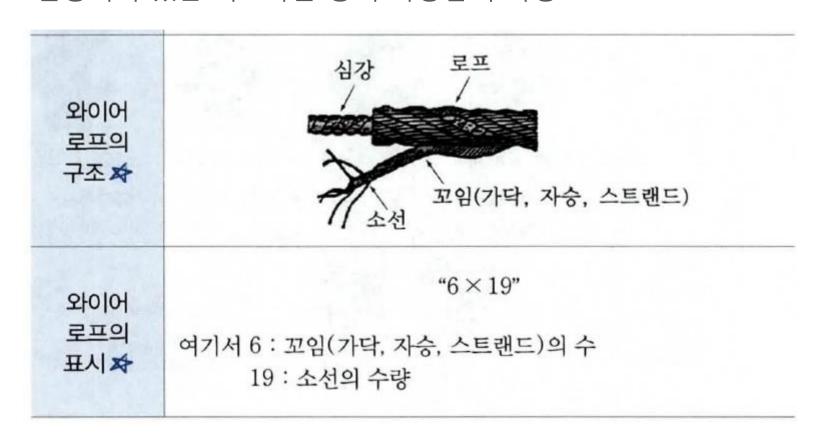


달아매기 각도에 의한 장력의 변화



* 매다는 각도는 작을수록 좋으나 60°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-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
 - 변형되어 있는 혹·샤클 등의 사용금지 사항



-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
 - 변형되어 있는 혹·샤클 등의 사용금지 사항

와이어 로프 꼬임의 종류 🖈

보통꼬임

- 스트랜드 꼬임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이 반대인 것
- 랑그꼬임에 비해 더 한층 유연하여 EYE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.
- 로프자체의 변형이 적다.
- 킹크가 잘 생기지 않는다.
- 하중을 걸었을 때 저항성이 크다.

② 랑그(랭)꼬임

- 스트랜드 꼬임 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것
- 보통꼬임의 로프보다 사용 시 표면전체가 균일하게 마모됨으 로 인하여 수명이 길다.
- 내마모성, 유연성, 내피로성이 우수하다.







[보통 Z꼬임] [보통 S꼬임]

[랭 Z꼬임]

[랭 S꼬임]

- 1. 지게차의 헤드가드 상부 틀에 있어서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의 크기는? (05.03.20)
 - ① 8cm 미만
 - ② 10cm 미만
 - ③ 16cm 미만
 - ④ 20cm 미만

- 2. 와이어로프 표기 6 Fi(24) IWRC20mm에서 괄호 안의 24의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? (05.03.20)
 - ① Strand 구성 소선 수
 - ② 와이어로프의 직경
 - ③ 로프의 인장강도
 - ④ Strand 수

- 3. 크레인과 관련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 것은? (05.03.20)
 - ① 체인 길이의 늘어남은 제조 당시보다 7%까지 허용된다.
 - ② 와이어로프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% 초과 시 사용할 수 없다.
 - ③ 훅, 샤클 등의 철구로서 변형된 것은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시용할 수 없다.
 - ④ 크레인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중 화물하증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 계수는 5 이상이다.

- 4. 지게차로 20km/hr의 속력으로 주행할 때 좌우안정도는 얼마이어야 하는가? (05.05.29)
 - ① 37%
 - 2 39%
 - 3 40%
 - 42%

- 5. 컨베이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? (05.05.29)
 - ① 벨트컨베이어
 - ② 체인컨베이어
 - ③ 로울러컨베이어
 - ④ 풀리컨베이어

- 6. 운전중 이동시 안전을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운반기계는? (05.05.29)
 - ① 포크리프트
 - ② 데릭
 - ③ 호이스트
 - ④ 컨베이어

- 7. 달기체인(Chain)의 신장률 체크사항 중 사용금지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? (05.08.07)
 - ① 폭에 대한 3%
 - ② 길이에 대한 5%
 - ③ 길이에 대한 2%
 - ④ D지름에 대한 7%

- 8.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 내용이 아닌 것은?(05.08.07)
 - ① 권과방지장치 ·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
 -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(橫行) 하는 레일의 상태
 -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
 - ④ 그 밖의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 등 이상 유무

- 9. 컨베이어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로서 옳은 것은? (05.08.07)
 - ① 비상정지 장치
 - ② 속도조절장치
 - ③ 급정지 장치
 - ④ 자동전격 방지기

10. 와이어 로프로 중량물을 달아 올릴 때 다음 중 로프에 가장힘이 작게 걸리는 각도는? (06.03.05)

- ① 30°
- 2 60°
- 3 90°
- (4) 120°

11.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1116kg이고, 한 줄로 물건을 매달고자 할 때 안전계수를 6으로 하면 얼마 이하의 물건을 매달 수 있는가? (06.03.0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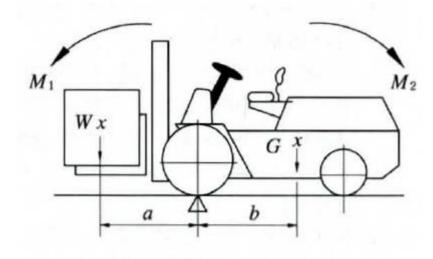
- 186(kg)
- 2 190(kg)
- ③ 195(kg)
- 4 200(kg)

12. 양중기에서 절단하중이 100톤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,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? (06.05.14)

- ① 10 톤
- ② 20 톤
- ③ 25 톤
- ④ 50 톤

13. 그림과 같은 지게차에서 W 를 화물중량, G 를 지게차 자체 중량, a 를 앞바퀴부터 화물의 중심까지의 최단거리, b 를 앞바퀴 중심에서 지게차의 중심까지의 최단거리라고 할 때 지게차 안정조건은? (06.05.14)

①
$$W \cdot a < G \cdot b$$



M₁ : 화물의 모멘트 M₂ : 차의 모멘트

14. 순간풍속이 몇 m/s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을 때,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하는 등의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? (06.08.06)

- **(1)** 25
- 2 30
- 3 35
- **40**

14. 순간풍속이 몇 m/s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을 때,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하는 등의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? (06.08.06)

- **(1)** 25
- **(2) 30**
- 3 35
- **40**

15. 승강기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? (06.08.06)

- ① 과부하방지장치
- ② 이탈방지장치
- ③ 리미트스위치
- ④ 비상정지장치

- 16. 크레인 작업시의 준수사항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? (06.08.06)
 - ① 인양할 하물은 바닥에서 끌어 당기거나,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
 -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의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할 것
 - ③ 고정된 물체는 직접 분리,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것
 - ④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게 할 것

- 17. 지게차 운전중의 주의사항으로 적합지 않는 것은? (07.03.04)
 - ① 견인시는 반드시 견인봉을 사용할 것
 - ② 정해진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말 것
 - ③ 운전자 외에 한사람이상 필히 탑승할 것
 - ④ 급격한 후퇴는 피할 것

18. 사업주는 크레인의 하중 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몇년간 보존해야 하는가? (07.03.04)

- ① 6개월
- ② 1년
- ③ 2년
- ④ 3년

- 19. 지게차에 설치하는 헤드 가드에 대한 조건 중 틀린 것은? (07.05.13)
 - ①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의 값(4톤 초과시 4톤)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
 -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은 16cm 미만일 것
 - ③ 운전석이 마련된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의 상면에서 헤드 가드의 상부를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
 - ④ 서서 조작할 때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 가드의 상부틀 하면 까지의 높이가 1.5m 이상일 것

20. 컨베이어(conveyer)의 역전방지 장치 형식이 아닌 것은? (07.05.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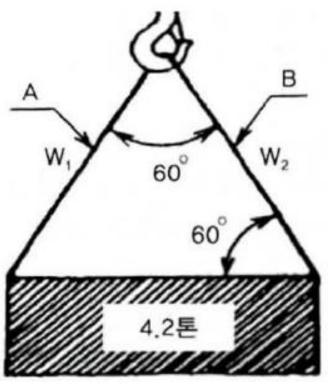
- ① 라쳇식
- ② 전기브레이크식
- ③ 램식
- ④ 로울러식

21. 크레인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? (07.05.13)

- ① 과부하방지장치
- ② 조속기
- ③ 권과방지장치
- ④ 브레이크장치

22.4.2ton의 화물을 그림과 같이 60°의 각을 갖는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올릴 때 와이어 로프 A에 걸리는 장력W₁은 약일마인가? (08.03.02)

- ① 2.10 ton
- ② 2.42 ton
- ③ 4.20 ton
- 4.82 ton



23. 어떤 로프의 안전하중이 200kgf 이고, 파단하중이 600 kgf 일때 이 로프의 안전율은? (08.03.02)

- ① 0.33
- 2 3
- 3 200
- 4 300

24. 와이어 로프 구성기호 "6 × 19"의 표기에서 "6"의 의미는? (08.03.02)

- ① 소선의 직경(mm)
- ② 소선수
- ③ 스트랜드수
- ④ 로프의 인장강도

25. 크레인 작업시 로프에 1 ton의 중량을 걸어, 20m/s²의 가속 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(kgf)은 약 얼마인 가? (08.03.02)

- 1040.34
- 2040.53
- 3 3040.82
- ④ 3540.91

26. 고리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4ton일 때, 이 로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사용하중은 몇 kgf 인가? (단, 안전계수는 5이다.) (08.05.11)

- 1 400
- 2 500
- **3** 600
- 4 800

27. 와이어 로프로 동일 중량물을 달아 올릴 때 다음 중 로프에 가장 힘이 크게 걸리는 각도(θ)는? (08.05.11)

- ① 30°
- (2) 60°
- ③ 120°
- (4) 150°

28. 양중기의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나? (단,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) (08.07.27)

- ① 5.0 이상
- ② 7.0 이상
- ③ 9.0 이상
- ④ 11.0 이상

29.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(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.)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는? (08.07.27)

- ① 크레인
- ② 리프트
- ③ 곤돌라
- ④ 승강기

30. 지게차의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09.03.01)

- ① 백미러
- ② 후방접근 경보장치
- ③ 백 레스트
- ④ 권과방지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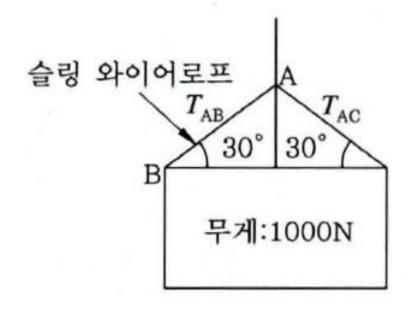
- 31.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화물 적재시의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? (09.03.01)
 - ① 최대적재량의 10%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한다.
 -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다.
 - ③ 붕괴, 낙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조치를 한다.
 - ④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한다.

32.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얼마 이 상이어야 하는가? (단,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) (09.03.01)

- 1 7
- 2 5
- 3 3
- 4

33. 그림과 같이 2개의 슬링 와이어로프로 무게 1000N의 화물을 인양하고 있다. 로프 T_{AB}에 발생하는 장력의 크기는 약 몇 N 인가? (09.03.01)

- ① 500 N
- (2) 707 N
- ③ 1000 N
- (4) 1414 N



34.지게차 안정도에서 주행시의 전후 안정도 기준은 몇%이내이어야 하나? (단, 기준은 무부하 상태이다.) (09.03.01)

- **(1)** 3.5%
- (2) 4%
- 3 6%
- 4 18%

35. 인력운반 작업시 안전수칙 중 잘못된 것은? (단, 기준은 무부하 상태이다.) (09.03.01)

- ①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팔과 무릎을 사용하고 허리를 구부린다.
- ② 운반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확인 착용한다.
- ③ 화물에 가능한 한 접근하여 화물의 무게중심을 몸에 가까이 밀착시킨다.
- ④ 무거운 물건은 공동 작업으로 하고 보조기구를 이용한다.

36. 지게차로 20 km/hr의 속력으로 주행할 때 좌우안정도는 몇 % 이내이어야 하는가? (09.05.10)

- ① 37%
- 2 39%
- 3 40%
- 42%

37. 리프트(lift)의 방호장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? (09.05.10)

- ① 역화방지장치
- ② 권과방지장치
- ③ 반발방지장치
- ④ 압력방출장치

38. 다음과 같은 작업 조건일 경우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? (09.05.10)

- 1 2
- 2 3
- 3 4
- 4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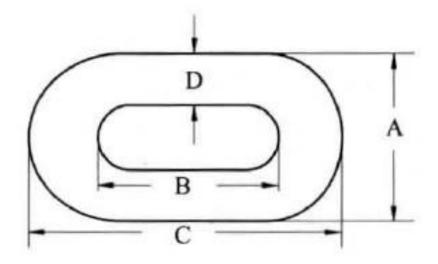
작업조건: 작업대에서 사용된 와이어로 프 1줄의 절단하중이 10톤, 인양하중이 4톤, 로프의 줄수가 2줄

39.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양중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 (10.05.09)

- ① 크레인
- ② **리**프트
- ③ 곤돌라
- ④ 체인블럭

40. 달기체인(chain)의 신장율 체크사항 중 사용금지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? (10.07.25)

- ① A의 폭에 대하여 3% 변화
- ② B의 길이에 대하여 5% 변화
- ③ C의 길이에 대하여 1% 변화
- ④ D의 지름에 대하여 7% 변화



Thank you